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설물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43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규정 삭제	2
2.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5년→3년) ...	7
※ 참고자료	9
1.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9
2. 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일본 오키나와 사례)	10
3.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주기 입법례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성일중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17.
3. 회부연월일 : 2024. 10.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이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삭제 등).

Ⅲ. 검토의견

1.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규정 삭제

-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삭 제>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	

현행	개정안
<u>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u>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규정(동 법 제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소음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 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중 제1종 소음대책지역에 속하는 토지에 한하여 ‘주거용시설’, ‘교육·의료시설’, ‘공공시설’ 용도로 시설물을 신축할 경우 ‘방음시설 설치’를 건축 허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 시설물 설치 제한 대상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전통 주거 시설 외에도 미용실, 음식점 등에서부터 이른바 구멍가게 등 소매점이나 외양간, 돼지우리, 양계장 등까지 방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철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규정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다소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규정은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소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피해를 방지한다는 보다 우월한 법익을 보호하고자(참고자료 2 참조),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이후 제1종 지역에 속한 토지를 새로 취득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시설물 설치 시 이중창과 철제문 설치¹⁾라는 최소한의 조건만을 부과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을 뿐, 시설물·토지 등을 종전대로 활용하는 것을 제약하지 않고 있음.

둘째, 유사 규정인 민간 공항 주변 지역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보다 대폭 완화된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민간 공항의 경우 제1종 지역 내에서는 신축 및 증·개축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별 용도제한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 공항의 경우 제1종 지역에 신축되는 주거용 시설 등에 한해서만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 그밖의 소음 대책지역 내 신축 및 증·개축의 제한이나 용도제한지역 지정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방음시설은 창외의 경우 복층창 16mm+복층창 16mm, 출입문의 경우 강철제 문 60mm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리 차단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할 것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비교표]

구분	군 공항			민간 공항 ²⁾		
	제1종	제2종	제3종	제1종	제2종 및 제3종 가 지구	제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
주거용 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교육 및 의료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공공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허가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용도 제한 비교표]

구분	군 공항			민간 공항 ³⁾		
	제1종	제2종	제3종	제1종	제2종	제3종
용도제한 지역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 완충 녹지지역 (이륙·착륙 안전지대) 2.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 가능	1. 전용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1. 준공업지역 2. 상업지역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국방부는 현행 규정은 소음대책지역 내 소음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 조치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⁴⁾

4) 참고로 2020년 11월~2023년 10월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내 시설설치 허가 신청 건수는 21,738건이었으며 이 중 설치제한 사례는 주거용 시설 26건임(일부 시설은 방음시설 설치 후 허가완료 확인)

2.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5년→3년)

-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u>5년마다</u>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u>3년마다</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법률 제정(2019년 11월 26일) 이후 ‘제1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년)’이 2020년 12월 처음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동 기본계획에 따라 방음벽 설치,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이전 및 통·폐합, 이·착륙 절차 개선과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의 제한, 실내사격장 설치 추진 등의 소음 저감 방안과 보상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음.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5년 장기임에 따라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환경변화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변화된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법 제정 이후 최초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률의 정책효과를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본 후에 기본계획 수립 주기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기본계획은 중기계획 성격의 계획이므로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공항소음방지법」의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사업계획’ 역시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참고자료 3 참조).

문 의 처
02)6788-5309

[참고자료 1]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

대상 시설	소음대책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용 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교육 및 의료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공공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비고

- 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
 -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양잠·양봉·양어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 위 표에서 방음시설은 창외의 경우 복층창 16mm+복층창 16mm, 출입문의 경우 강철제 문 60mm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리 차단 성능을 갖춘 것을 의미하며, 창은 외부 공기에 직접 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참고자료 2]

[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일본 오키나와 사례)]

조사항목		조 사 결 과
청력 저하		* 85WECPNL(웨클)⁵⁾이상부터 청력 저하 현상 의심 * 오키나와의 경우 1,156명중 11명이 청력 손실
정신 장애	신 경 질	* 소음도가 높을수록 정신 장애 심화 * 75WECPNL부터 신체적 이상 발견, 90WECPNL 이상부터 신경질, 정서불안 현저화
	정서불안	
	사고방해	* 95WECPNL 이상 시 조사자의 70%가 사고방해 현상 보임
	불 쾌 감	* 불쾌감은 90WECPNL 이상 시 40% 이상
청취방해		* 소음도가 높을수록 TV, 라디오, 전화 등 청취 방해 * 90WECPNL 이상 시 80%가 청취 방해 호소
수면방해		* 저소음 지역에서도 수면 방해
방음공사의 유의성		* 항공기 방음공사는 주민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함. * 소음이 높을수록 방음벽 공사의 실효성 악화 * 방음공사 효과 : 75~80WECPNL 지역 80%, 95WECPNL 이상 지역 30% 정도
아동 행동 발달		* 고소음지역일수록 감기/식욕부진/친구 사귀기 어려움 현상 발견
2.5kg이하 신생아 출생		* 기지 근접 지역: 9.1%, 주변지역: 7.6%, 기지 주변 이외지역: 7%

※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군용항공기소음기준(안) 설정에 관한 연구」, 2002. 9.

5) 웨클 :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측정된 소음 중 최고값을 각각 합하여 (에너지)평균한 값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

[참고자료 3]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주기 입법례]

법률	계획의 종류	계획 수립 주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3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0년 ⁶⁾
「공항시설법」	공항개발 기본계획	주기 없음 ⁷⁾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기본계획	주기 없음 ⁸⁾
「국가재정법」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
「국가재정법」	중기사업계획	5년

6) 다만,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7) 다만,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8) 다만, 국방개혁추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